

2022년도 제4차 재무경영위원회 회의록

I 개최개요

- 일 시 : 2022. 6. 7.(화) 14:00~15:25
- 장 소 : 1호관 507호 영상회의실
- 참석현황 : 재적위원 20명 중 참석 16명, 불참 4명
 - 참석위원(16명)
 - 위원 강현철, 위원 김규원, 위원 박일충, 위원 서병조, 위원 서정현, 위원 송다영, 위원 옥동석, 위원 윤태웅, 위원 이경녕, 위원 이정두, 위원 이현구, 위원 임조순, 위원 조길수, 위원 조현우, 위원 최길재, 위원 최수봉
 - 불참위원(4명)
 - 위원 이영애, 위원 이은정, 위원 홍기용, 위원 조병관

II 회의결과

- 제12호 심의안건 : 인천대학교 조교 보수 규정 제정규정안
 - 안건요지[보고자:교무과장]

- 제안사유
 - 가. 인천대학교 정관 및 조교 노조 단체협약서를 근거로 인천대학교 조교 보수 규정에 관한 세부기준을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법인화 이후 부재하였던 조교 보수 제규정의 명문화된 근거를 마련하여 교육·연구 및 학사업무 처리의 안정적이고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가. 봉급 및 수당(정근수당, 장기근속수당, 가족수당, 육아휴직수당, 학사관리수당, 시간외근무수당, 정액급식비, 명절휴가비, 연가보상비(제5조 ~ 제9조))

- 나. 보수는 매월 17일 지급하고, 휴직기간 중에는 감액 지급, 징계처분기간 보수 감액 지급(제10조 ~ 제20조)
 - 정직은 보수의 전액, 감봉은 보수의 1/10 감함

○ 주요 질의 및 응답

- 제12호 인천대학교 조교 보수 규정 제정규정안 및 제13호 인천대학교 조교 보수업무 등 처리지침 제정지침안 심의 안건 일괄 상정
- 조교 보수 지급 관련 근거 및 적용 범위에 대해 설명을 요청함.
 - ⇒ 단체협약서를 근거로 하여 지급하고 있으며 적용범위는 정관 40조에 의거하여 일반 행정 조교(180명)로 정해져 있음
- 조교의 신분 체계에 대해 개선 필요

○ 심의결과 : 안건 이의 없음으로 원안가결 됨

□ 제13호 심의안건 : 인천대학교 조교 보수업무 등 처리지침 제정지침안

○ 안전요지[보고자:교무과장]

- 제안사유
 - 가. 인천대학교 조교 보수 규정안에 대한 세부기준을 반영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가. 월봉급액은 별표 1로 규정함(제4조)
 - 나. 각종 수당의 지급 기준 및 금액에 대하여 규정함(제9조 ~ 제18조)
 - 정근수당, 장기근속수당, 가족수당, 육아휴직수당, 학사관리수당, 시간외근무수당, 정액급식비, 명절휴가비, 연가보상비

다. 주요 변경사항

구 분	당초	변경	비고
일부 수당의 명칭변경 통합	· 정액연구비(월 230,810원) · 교재연구비(월 81,770원) · 학사지도비(월 56,000원)	· 학사관리수당(월 368,580원)	
시간외근무 수당 신설	-	지침안 제14조(시간외근무수당) 근무명령에 따라 규정된 근무 시간 외에 근무한 조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기준단가에 의해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2023년 법인회계 이후 예산확보를 통해 지급 협의, 조교 노조와 임단 협을 통해 세부기준 마련
연가보상비 신설	-	지침안 제17조(연가보상비) 조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연가보상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심의결과 : 안전 이의 없음으로 원안가결 됨

□ 제14호 심의안건 : 인천대학교 글로벌언어문화원 INU어학센터
교육운영 지침 일부개정지침안

○ 안전요지[보고자:글로벌언어문화원장]

○ 제안사유

가. INU어학센터는 그간 중단되었던 한국어연수과정을 '22년 9월부터 운영재개 및 공백기간 동안 변화된 상황을 반영하고자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함

나. 교육부 인증제 취득과 더불어 우수학생 학부과정 입학유도 등 선순환 기능 활성화와 정상운영 발판을 마련하고자 한국어연수생 수강료 및 강사료 등에 대한 사항을 일부 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규정 제명, 제1조, [별표4], 제10조, 제15조 및 제17조 부서명칭 변경

나. 제5조(수강료등) [별표1] 한국어교육과정 등록비 및 수강료

다. 제10조(한국어강사 채용) [별표5] 한국어강사 채용 서류전형

라. 제12조(한국어강사의 강사료등) [별표6] 한국어교육 강사료

마. 제15조(수강료등) [별표2] 외국어교육과정 수강료감면기준에 사항을 일부 개정함

○ 주요 질의 및 응답

- 수강인원의 연차별 계획 및 수강료 감면기준에 대해 설명을 요청함
 - ⇒ 9월 개교로 4학기 후에는 7개반에 105명 정도를 목표로 하며, 교육부 중도 이탈율이 2%에서 10%로 완화되어 옛날 수준인 2% 정도로 이탈자를 막고자 계획하고 있으며 감면혜택은 5%였음

○ 심의결과 : 안전 이의 없음으로 원안가결 됨

□ 제15호 심의안건 : 2022년 법인회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 안전요지[보고자:기획예산과장]

- 제안사유
 - 가. 보조금 수입과 전입금 수입의 세출 증감 조정과 시급을 요하는 세출예산의 조정을 위하여 본 재무 경영위원회의 심의를 받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예산규모 : 228,838,602천원 【기정예산 대비 3.0% / 6,628,479천원】

(단위 : 천원)

제1회추경예산(안)	기정예산액	증감액	증감율(%)
228,838,602	222,210,123	6,628,479	3.0%

나. 세입예산(안)

(단위 : 천원)

구	분	1회추경 예산(안)	부 서 명
합 계		6,628,479	
정부출연금 및 보조금수입		6,128,479	
	천원의 아침밥 지원 사업비(성립전경비)	24,400	학생지원과
	일경험프로그램 운영 사업비(성립전경비)	70,206	학생지원과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사업비(성립전경비)	600,000	취업역량개발과
	장애학생지원센터 운영지원 사업비(성립전경비)	18,953	장애학생지원센터
	대학혁신지원사업 보조금(성립전경비16.2억원+추가경정 37.8억원)	5,400,000	대학혁신사업단
	연수구 대학연계 평생학습활성화 사업비(성립전경비)	14,920	평생교육원
전입금 수입		500,000	
	산학협력단 전입금 수입(성립전경비)	500,000	공동기지원

다. 세부 사업별 세출예산(안)

(단위 : 천원)

정책	단위	세부	예산과목	사업개요	1회추경 예산(안)	부서명
합 계					6,628,479	
학사 및 교육운영					6,613,559	
대학교육 및 연구여건 개선					570,206	
강의환경 조성지원					70,206	학생지원과
일용인부임					70,206	
일경험프로그램 참여자 인건비						
특성화 및 대학정책 연구지원					-	대외전략과
직원 법정부담금					4,200	
지역동행 플랫폼 연구소 직원 법정부담금						
기타직 인건비					42,000	
지역동행 플랫폼 연구소 인건비						
행사비					△ 50,000	
지역동행 플랫폼 구축 사업 활동지원비						
행사비					3,800	
지역동행 플랫폼 연구소 사무국 개소식						
공동기기원 운영					500,000	공동기기원
자산및물품취득비					492,000	
공동활용장비 구입비						
장비관리비					8,000	
공동활용장비 유지보수 및 부품교체						
학생활동 지원					43,353	
학생활동지원					24,400	학생지원과
학생지원비					24,400	
천원의 아침밥 학생지원비						
장애학생센터 지원					18,953	장애학생 지원센터
일용인부임					6,562	
교육지원인력 인건비						
일반용역비					5,291	
원격프로그램 운영비						
행사비					1,100	
사전교육 행사비						
자산및물품취득비					6,000	
학습보조기기 구입비						
취업지원					600,000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운영					600,000	취업역량개발과
임차료					1,500	
센터 복합기 임차비						
여비					4,000	
센터 여비						
일반수용비					13,500	
센터 소모품비						
교육훈련비					20,000	
센터 역량강화교육비						
일반용역비					419,000	
진로교과목 콘텐츠 개발 등						
업무추진비					14,000	
업무협의 및 컨소시엄 관리비						
행사비					15,000	
교직원 역량강화 워크샵						
학생지원비					113,000	
비교과 프로그램 운영 등						
대학혁신지원					5,400,000	
대학혁신지원사업 운영					5,400,000	대학혁신사업단
직원법정부담금					28,600	
사업운영 직원 법정부담금						
기타직인건비					393,500	
사업운영 직원 인건비						
임차료					198,000	
교육지원 서버 임차료						
여비					18,000	
사업운영 출장여비						
일반수용비					44,000	
프로그램 운영 일반수용비						
인쇄출판비					45,500	
연구보고서 제작 인쇄비						
제세공과금					13,000	
협의회 연회비 및 컨디션 참가비 등						
일반용역비					651,750	
교육환경 구축 및 프로그램 지원 용역						
업무추진비					3,410	
사업운영 업무추진비						
홍보비					6,900	
프로그램 운영 홍보비						

(단위 : 천원)

정책	단위	세부	예산과목	사업개요	1회추경 예산(안)	부서명
			행사비	특성화, 비교과 프로그램 운영	903,650	
			기타운영비	위원회 운영 및 전문가 위원 수당	21,700	
			연구활동비	특성화 교과목 및 프로그램 개발 등	584,430	
			학부교내장학금	특성화, 비교과 프로그램 운영 장학금	297,400	
			대학원교내장학금	연구소 학생연구원 장학금	124,000	
			학생지원비	특성화, 비교과 프로그램 운영 학생지원비	361,100	
			기타학생경비	특성화, 비교과, 학습지원 프로그램 운영	401,400	
			반환금	사업비 반환금	9,000	
			교육연구기자재구입	교육용 기자재 구입	88,500	
			자산및물품취득비	특성화교육 인프라 및 창의협업공간 구축	944,260	
			도서구입	특성화 학과 도서구입비	2,000	
			건설중인시설비	특성화교육 인프라 및 창의협업공간 구축	259,900	
			평생교육 지원		14,920	
			평생교육 활성화		14,920	
			평생교육원 운영		14,920	평생교육원
			특별강사료	연수구 대학연계 평생학습 활성화 사업 특별강사료	9,650	
			홍보비	연수구 대학연계 평생학습 활성화 사업 홍보비	1,170	
			행사비	연수구 대학연계 평생학습 활성화 사업 행사비	4,100	

○ 심의결과 : 추가 질의 및 안전 이의 없음으로 원안가결 됨

폐회선언

○ 이상 보고와 논의를 종료하고, 위원장이 15시 25분에 폐회를 선언함.